

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의안 번호	제2976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2. 03. .
제출자 김포시장

1. 심사경과

- 본 안건은 2022년 3월 07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- 중대재해처벌법 시행(‘22. 1. 27.)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관리하듯이 안전도 경영의 일부라는 경영문화 정착과 확산에 기여

3. 주요내용

- 대표이사 책임 명시(이사장 → 대표이사) (안 제8조)

4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경영책임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과 역할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의 책임을 명시하여 안전한 경영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상위법과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